

## 7. 대한예방치과·구강보건학회 역학조사위원회 규정

제정 2010. 9. 15.  
대한예방치과·구강보건학회규정 제 8호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대한예방치과·구강보건학회(이하 '학회'라 한다) 회칙의 규정에 의거한 학회산하 역학조사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의 역할 및 구성에 대한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역할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학조사에 대한 연구 및 자문업무를 수행함을 그 역할로 한다.

- 가.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의 시행방안 연구 및 자문
- 나.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시행방안 연구 및 자문
- 다. 기타 구강건강 역학조사와 관련된 조사지침 제개정, 질관리, 분석, 결과보고 및 제반 자문

### 제3조(구성)

- ① 위원회의 위원은 역학조사의 경험과 학식이 있는 학회회원 중에서 학회장의 임명에 따라 구성하되, 그 규모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하고,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- ② 역학조사위원장은 학회장이 임명하되, 그 임기는 5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
- ③ 학회 학술이사는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.
- ④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,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

### 제4조(회의)

-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괄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, 보관하여야 하며, 그 내용을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.

**제5조(재정)** 본 회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학회의 재정상황에 준하여 지원한다.

**제6조(기타)**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학회 회칙과 일반 관례에 따른다.

#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조직정비) 이 규정이 통과됨과 동시에 학회산하의 실태조사특별위원회는 해체한다.